

의안번호	제 2008 - 1 호
의 결 연 월 일	2008. 3. 10. (제6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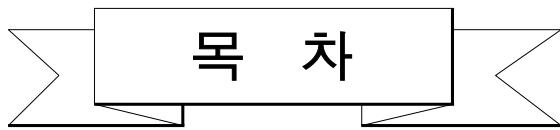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I. 팀별 회의	1
1. 제1팀	1
2. 제2팀	4
3. 특별연구팀	6
4. 총괄팀	8
II. 전체회의	9
1. 일시 · 장소	9
2. 참석자	9
3. 주요 안건	9
4. 회의 내용 및 결과	9
III. 연구계획안	11
1. 제시된 연구주제	11
2. 2008년도 연구주제	11
IV. 향후 일정	11

별첨 김한균, “영국의 양형합리화정책과 양형기준제도”

서보학, “독일의 양형제도 연구”

“일본의 양형제도 및 양형정책”

이주형, “뉴질랜드 양형기준제도(초고)” - 요약문 포함

조은경, “재벌예측 기반 양형시스템 구축 연구 계획서”

손철우, “외국 양형기준제 분석”



이주형, “영 · 미 양형기준제도의 장단점 분석(초고)” - 요약문 포함
전문위원 제1팀 제5, 6차 회의 회의록
전문위원 제2팀 제5, 6차 회의 회의록
전문위원 특별연구팀 제4차 회의 회의록
전문위원 총괄팀 제5차 회의 회의록
전문위원 제6차 전체회의 회의록

I. 팀별 회의

1. 제1팀

가. 제5차 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07. 12. 17.(월)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1502호 회의실

(2) 참석자(7명)

- 전문위원 김한균, 서보학, 신흥렬, 이주형, 이호중, 진선미(이상 가나다순, 이하 같음)
- 운영지원단장(간사)

(3) 회의 내용 및 결과

(가) 외국 양형제도 연구

- 특별연구팀 요청 항목에 대한 보고서를 1. 14.까지 제출하고, 팀 내에서도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나) 2008년도 연구계획안

- 기본범죄수준 결정이 별도의 과제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주무전문위원 지정 등 세부적인 연구진행 방식에 대하여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

나. 제6차 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08. 1. 28.(월) 14:10 ~ 18:15
- 장소 : 대법원 505호 회의실

(2) 참석자(6명)

- 전문위원 김한균, 서보학, 신팽렬, 이주형, 이호중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추가 보고서 제출 현황

주무전문위원	연구과제
김한균	영국의 양형합리화 정책과 양형기준제도
서보학	독일의 양형제도 연구
	일본의 양형제도 및 양형정책
이주형	뉴질랜드 양형기준제도(초고)

(4) 회의 내용 및 결과

(가) 영국 양형제도 연구

- 김한균 전문위원이 「영국의 양형합리화 정책과 양형기준제도」 발표
- 발표자는 점진적인 양형기준 설정이 양형합리화의 성공을 가져올 것이고, 기존의 양형정책과 양형관행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야 효과적이라는 견해 제시
 - 이에 대하여 개별적인 양형기준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법관들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도 문제라는 의견 제시됨

(나) 뉴질랜드 양형제도 연구

- 이주형 전문위원이 「뉴질랜드 양형기준제도(초고)」 발표
 - 발표문 요지는 별첨
- 발표자는 뉴질랜드가 영국식 양형기준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교도소 수감인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망라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음을 강조
 - 뉴질랜드가 추구한다는 양형기준, 특히 '상대적으로 망라적'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발표자는 '실형선고를 통하여 수용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범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답변
 - '망라적'이라는 개념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발표자는 반드시 범죄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현황 분석에서 '수용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범죄'가 포함되어야 하는 의미라고 답변

(다) 독일 양형제도 연구

- 서보학 전문위원이 「독일의 양형제도 연구」 발표
- 발표자는 독일의 비록 완전하지는 않으나 법제화를 통하여 양형 문제점의 해결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양형이론의 발전과 양형구조의 개선을 가져왔음을 강조
 - 독일의 경우 예방문제는 형종이나 집행유예 영역으로 넘기고, 형량은 책임문제로 해결하는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형종부터 결정하므로 독일 양형이론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제시됨

(라) 일본 양형제도 연구

- 서보학 전문위원이 「일본의 양형제도 및 양형정책」 발표
- 발표자는 일본의 양형제도는 형사소송규칙에서 양형이유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미국식 양형기준 도입에 대한 요구가 강하지 않다고 발표

(마)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계획

- 조은경 전문위원이 제출한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계획'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마약범죄는 판매사범과 사용사범의 구별이 어렵고 재범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취급해서 조사하는 경우 변별력이 없음
 - 재범에 과실범을 포함하는 경우 재범률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음
 - 재범예측자료를 조사한 후 그 자료를 어떤 단계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형 선고단계에서 재범 예측 평가를 반영하는 경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재범의 위험성 평가를 기초로 구금/비구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 평가를 점수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보다 의미 있는 재범예측 연구를 위하여는 별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함

2. 제2팀

가. 제5차 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07. 12. 17.(월) 17:10 ~ 18:30
- 장소 : 대법원 505호 회의실

(2) 참석자(5명)

- 전문위원 곽동우, 박형관, 손철우, 조은경, 최석윤

(3) 회의 내용 및 결과

(가) 미국 양형제도 연구

- 특별연구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1월초까지 보완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 미국 양형제도에 대하여 별도의 제2팀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특별연구팀 보고와 중복된다는 의견으로 나뉨

(나) 2008년도 연구계획안

- 공통 양형인자에 대한 규범적 연구를 우선 진행하기로 함
- 제6차 회의에서 연구계획안에 대하여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

나. 제6차 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08. 1. 17.(목) 16:10 ~ 18:05
- 장소 : 대법원 505호 회의실

(2) 참석자(4명)

- 전문위원 박형관, 손철우, 이천현, 최석윤

(3) 회의 내용 및 결과

(가) 2008년도 연구계획안

- 온라인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팀에 보고하여 연구과제를 확정하기로 함

(나) 전문위원 연구 활성화 방안

- 총괄팀 활성화, 운영지원단의 연구인력 고용, 전문위원 슬림화, 전문위원 상근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3. 특별연구팀

가. 일시·장소

- 일시 : 2008. 1. 24.(목) 13:50 ~ 16:00
- 장소 : 대법원 505호 회의실

나. 참석자(5명)

- 전문위원 손철우, 이주영, 이천현, 이호중, 진선미

다. 추가 보고서 제출 현황

주무전문위원	연구과제
손철우	외국 양형기준제 분석
이주형	영·미 양형기준제도의 장단점 분석(초고)

라. 회의 내용 및 결과

- 손철우, 이주형 전문위원이 영국 및 미국 양형기준제의 장단점에 관한 보고서 발표

- 손철우 전문위원은 영미식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요소를 취사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이주형 전문위원은, 뉴질랜드가 영국식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국식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보완, 극복하는 형태의 더욱 계량화되고, 종합적, 망라적 형태의 양형기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강조(발표문 요지는 별첨)
- 손철우 전문위원의 발표문 중 별지로 첨부된 외국 양형기준제에 대한 설명 부분 중 출처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었음
- 이주형 전문위원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과 답변이 있었음
- 재범과 상습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미국 연방식 양형기준의 긍정적 측면으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재범률 감소 등 실제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는지 확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발표자는 이 부분은 미국 연방양형위원회가 평가한 긍정적 효과로써 양형기준의 시행으로 재범과 상습범에 대한 형집행이 예전보다 훨씬 엄격하여졌다는 의미라고 답변
 -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유죄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미국 연방식 양형기준에 대하여 유죄협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비판이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발표자는 우리나라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유죄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고, 부패범죄나 조직범죄 또는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수사를 위해 신고자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하거나 벌금 등으로 약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답변
- 향후 양형자료조사 결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심도 깊

은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4. 총괄팀

가. 일시·장소

- 일시 : 2008. 2. 1.(금) 15:10 ~ 16:0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나. 참석자(5명)

- 전문위원 김인겸, 박형관, 이호중, 조국
- 운영지원단장(간사)

다. 회의 내용 및 결과

- 수석전문위원이 각 팀 논의를 기초로 작성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 다만 효율적 연구 진행을 위하여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선정과 관련한 각 팀의 연구 영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함
 - 특별연구팀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의 선정 원칙을 제시
 - 제1팀이 특별연구팀의 원칙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구체적 대상 범죄 선정에 관한 연구를 하되, 필요한 경우 제2팀도 함께 연구
 - 제2팀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가 정해지면 범죄유형 또는 죄명별로 다루어야 할 양형인자를 연구하고, 그 전에는 공통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연구 진행
- 양형위원회의 독자적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문위원 보고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됨

II. 전체 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8. 2. 1.(금) 16:23 ~ 18:09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2. 참석자(15명)

- 전문위원 곽동우, 김인겸, 김한균, 박형관, 서보학, 손철우, 신흥렬, 이주형, 이천현, 이호중, 조국, 조은경, 진선미, 최석윤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외국 양형제도
- 2008년도 연구계획 수립 방안

4. 회의 내용 및 결과

가. 외국 양형제도

- 아래와 같이 주무전문위원이 발표

주무전문위원	발표 주제
김한균	영국의 양형합리화 정책과 양형기준제도
서보학	독일의 양형제도 연구
	일본의 양형제도 및 양형정책
손철우	외국 양형기준제 분석
이주형	뉴질랜드 양형기준제도
	영·미 양형기준제도의 장단점 분석

- 특별연구팀(팀장 : 이호중 전문위원)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각주마다 양형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장단점 분석을 추가로 세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
- 양형기준의 효과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범위의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 제시됨
 - 개별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면 효과 분석이 어려우므로 모든 범죄는 아니더라도 효과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그 효과를 사전에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는 기존 양형실무를 전제로 분석하면 되므로 효과 분석을 위하여 반드시 많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는 없음
 - 한편 수용 능력에 맞추어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양형이유의 기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 제시됨
 - 양형기준 이탈 여부에 관계 없이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형기준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음

나. 2008년도 연구계획안

- 수석전문위원이 총괄팀 논의를 거쳐 확정된 연구계획안을 설명

III. 연구계획안

1. 제시된 연구주제

- 의결안건 「2008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설명자료의 별첨 문서 참조

2. 2008년도 연구주제

- 의결안건 「2008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설명자료 참조
 - 2007. 8. 20. 의결된 2007년도 전문위원 연구과제 중 ① ‘우리나라의 양형현황’ 및 ②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대하여는 2008년 4월경까지 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우리나라의 양형현황’에 대하여는 제1팀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대하여는 특별연구팀에서 연구 진행 중임
 - 다만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의 세부과제인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에 대하여는, 특별연구팀이 선정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적으로 제1팀에서 선정 원칙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범죄 선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기로 함

IV. 향후 일정

- 2008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에 따라 팀별 주무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연구 진행
- 2008년 3월 하순경 제7차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